

의안번호	2204502
의 퇴 인	김민전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5.
추 계 번호	24D417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앙 및 17개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1억 5,400만원, 2030년 33억 1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0억 3,500만원(연평균 32억 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계	연평균
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 (안 제5조제1항 등)	3,154	3,126	3,188	3,251	3,316	16,035	3,207

주: 1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(안 제5조제1항 등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1급 공무원의 평균 보수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1항 등(위원장)	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며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 임기제공무원으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11조의2(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)	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로 운영하며,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제1항 등(위원장)	○	-
2	안 제11조의2(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)	-	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회의 참석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8명의 위원장(부총리급 1명, 1급 임기제공무원 17명)에 대한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로 한정
 - 현행법에 따라 중앙 및 17개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 중이고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의 재정소요가 있으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기로 함
 - 각 위원회별로 1명의 인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사무실은 기존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가정
-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□ 개정안에 따라 중앙 및 17개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총리급 1명, 1급 임기제공무원 17명을 채용함에 따라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 발생

□ (보수) 각 직급별 인원에 직급별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산출

- 직급별 보수는 부총리급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2024년 정무직공무원 연봉표, 1급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에 근거하여 봉급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성과상여금, 초과근무수당,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
- 보수는 2024년 2.5%, 이후에는 최근 3년(2022~2024년)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 1.9% 적용

[표 2] 직급별 1인당 보수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부총리급	16,608	16,924	17,245	17,573	17,907	18,247	18,594
1급	13,488	13,744	14,005	14,271	14,543	14,819	15,10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3] 보수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부총리급(1명)	172	176	179	182	186
1급(17명)	2,381	2,426	2,472	2,519	2,567
소계	2,553	2,602	2,651	2,701	2,75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기관부담금) 추정된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¹⁾을 곱하여 산출

□ (기본경비) 추정된 보수에 2024년 예산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.943%를 곱하여 산출

1) 2026년 13.1%, 2027년 13.2%, 2028년 13.3%, 2029년 13.4%, 2030년 13.5%

- (자산취득비) 2026년 한 해에만 자산취득비가 발생하며 공무원 증원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인당 자산취득비(502만원)를 곱하여 산출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중앙 및 17개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1억 5,400만원, 2030년 33억 1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0억 3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수(a)	2,553	2,602	2,651	2,701	2,753	13,260
기관부담금(=a×요율)	334	343	353	362	372	1,764
기본경비(=a×6.943%)	177	181	184	188	191	921
자산취득비	90	—	—	—	—	90
합계	3,154	3,126	3,188	3,251	3,316	16,03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1급 공무원의 평균 보수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